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6. 12. 20.

사회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6년 11월 11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6년 11월 21일

라. 상정일자 : 제198회 영등포구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2016. 12. 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가.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현 조례를 정비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 변경(안 제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기금의 용도 추가(안 제3조)
 -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시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함(안 제5조 제2항)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연임 사항 변경(안 제5조제5항)
 - 연임할 수 있다 →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 변경 시 구의회 의결을 받지 않는 사항 변경(안 제9조제3항)
 -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 → 10분의 2 이하
- 조직개편에 따른 기금담당주사(팀장) 명칭 변경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이태선)

-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상위법 개정과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에 따라 기금운영심의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임.
- 주요내용은
 - 1)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금의 용도에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사항 및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옥외광고산업의 지원과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2)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토록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 하며, 간사 및 회계공무원의 행정직위 명칭을 기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정비함.
 - 이는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기금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 사료됨.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근거하여 기금
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구의회 의결을 받지 않는
지출금액을 10분의 5 이하에서를 10분의 2 이하로 조정함.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맞게 정비하여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83 호
----------	---------

제출연월일 : 2016. 1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근거를 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정비·보완하는 등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금의 법률 용어를 ‘옥외광고정비기금’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변경(안 제1조)
- 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5조제2항)
- 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촉직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며, 이에 따른 기존위원의 권리나 지위에 대하여는 부칙에 경과조치를 마련(안 제5조제5항 및 부칙 제2조)
- 라. 그 밖에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며, 잘못된 용어를 정비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2016.09.29.~2016.10.19., 20일간) 결과: 의견없음
- 2) 일부 내용 추가로 인한 재입법예고(2016.11.10.~2016.11.15., 5일간) 결과: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옥외광고 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제1호 중 “법 제6조제4항”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20조의2”를 “법 제10조의3”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 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6.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기준 개발사업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제1항 중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를 “관리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는 자로 한다”를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요항목인 장·관·항의”를 “정책사업”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광고물디자인담당주사가”를 “기금업무 담당팀장이”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주요항목인 장·관·항의”를 “정책사업”으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주요항목”을 “정책사업”으로, “5”를 “2”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금운용 성과분석, 복식부기회계처리에 관한 재무보고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를 “결산서와 함께”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광고물디자인담당주사”를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옥외광고물 등 관리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 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을 조성하기 위하여 <u>서울특별시영등 포구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u>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 적으로 관리·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금의 재원) <u>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 수익금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u> 2. 3. (생략) 4. <u>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 금</u> 5. ~ 7. (생략) <p>제3조(기금의 용도) ① <u>기금은 다음</u></p>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u></p> <p>제1조(목적) ----- 「<u>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u>」----- ----- <u>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u>----- ----- -----.</p> <p>제2조(기금의 재원) <u>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 2. 3. (현행과 같음) 4. <u>법 제10조의3</u>----- -- 5. ~ 7. (현행과 같음) <p>제3조(기금의 용도) ① <u>기금은 다음</u></p>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 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기준 개발사업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생략)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 ④ (생략)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6.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기준 개발사업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
----- 관리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생략)

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 4. (생략)

⑤ 제3항 및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위촉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략)

2. 주요항목인 장·관·항의 지출금액의 변경

3. 4. (생략)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위촉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⑤ -----

-----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

⑥ ----- 위원 중 -----
-----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
----- 각 호 -----
-----.

1. (현행과 같음)

2. 정책사업 -----

3.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광고물디자인 담당주사가 된다.

③ (생략)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인 장、관、항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 의 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기금의 결산) ① (생략)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기금운용 성과분석, 복식부기회계처리에 관한 재무보고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구의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
-- 1명-----.

② -----
----- 기금업무 담당팀장이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

----- 각 호-----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정책사업

----- 받아야 ---. ----- 정책사업 ----- 2 -----
-----.

제10조(기금의 결산) ① (현행과 같음)

② -----
----- 결산서와 함께 -----

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생략)

② 기금운용관은 건설관리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광고물디자인담당주사로 한다.

③ (생략)

④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

제11조(회계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기금업무 담당팀장-----.

③ (현행과 같음)

④ ----- 재무관-----

-----.